

	학교법인 경민학원 정관	규정번호	1-0-01
		제정일자	1968. 2.10.
		개정일자	2026.7.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고등 교육, 중등교육 및 유아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23.)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경민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개정 2008.3.27, 2011.4.29, 2012.2.13, 2013.3.1, 2014.4.23, 2014.6.27., 2014.11.5.)

1. 경민전문대학(교명은 “경민대학교”로 한다)
2. 경민중학교
3. 경민여자중학교
4. 경민고등학교
5.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
6. 경민IT고등학교
7. 경민대학교부설유치원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545(가능동)에 둔다. (개정 2014.2.15.)

제5조(정관의 변경) ① 이 법인의 정관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 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23.]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 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 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08.2.1.)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 수 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9조의2(예산·결산의 공개)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결산은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1.16.]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 일까지로 한다.

제 3 절 예산·결산 자문위원회 (삭제 2006.11.16.)

제13조 삭제 (2006.11.16.)

제14조 삭제 (2006.11.16.)

제15조 삭제 (2006.11.16.)

제16조 삭제 (2006.11.16.)

제17조 삭제 (2006.11.16.)

제 3 장 기 관**제 1 절 임 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06.11.16., 2009.2.10., 2014.2.15., 2019.2.8., 2022.11.15)

1. 이 사 8인 (이사장 1인 및 개방이사 2인을 포함한다)

2. 감 사 2인 (추천감사 1인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상근임원으로 이사장 및 이사 1인을 둘 수 있다. (신설 2009.2.10.)

③ 상근임원의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2.10)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개정 2006.11.16.)

1. 이 사 4년(개방이사를 포함한다)

2. 감 사 2년(추천감사를 포함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6.)

② 임기 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사정수 3분의 2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자진사퇴의 경우 보고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6.11.16., 2009.2.10.)

1. 사립학교법 및 이 정관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관할청의 해임 요구가 있을 때
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3에 의한 법인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공개한 때
4. 이 법인의 설립이념 및 교육목적을 변경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을 지도·선동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
5. 이 법인의 중요 추진사업을 반대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을 지도·선동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
6.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
7. 당해 법인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경우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할 경우 이 법인의 건학 이념 구현에 적합한 인사를 추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2.1.]

제20조의3(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추천위원회는 경민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에 둔다.

(개정 2014.4.23.)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1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29., 2012.3.1., 2014.4.23.)

1.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5인
2. 대학평의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6인
 - 가. 경민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1인
 - 나. 경민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1인
 - 다.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1인
 - 라. 경민IT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1인
 - 마. 경민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1인
 - 바. 경민여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1인

③ 제2항제2호의 추천위원은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위원회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고 이 법인의 건학 이념 구현에 적합한 인사이어야 한다.

④ 추천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2.1.]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에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11.16.)

③ 이사 중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08.2.1.)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06.11.16.)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신설 2006.11.16, 개정 2008.2.1.)

⑥ 제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6.11.16.)

⑦ 이 법인의 건학이념 및 교육목표에 동의하지 않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11.16.)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6.11.16., 개정 2022.4.22.)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경과한 자

제22조(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개정 2006.11.16.)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2006.11.16.)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결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8.2.1.)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에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신설 2006.11.16., 2008.2.1.)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6.11.16.)

제 2 절 이 사 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개정 2006.11.16.)

② 이사회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11.16.)

제29조(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6.)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이사회 소집권자가 결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11.16.)

⑤ 이사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2.)

제30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

에서 회의록의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2.1.]

제 3 절 대학평의위원회 (신설 2006.11.16.)

제31조(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 대학교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 (이하 “평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1., 2014.4.23.)

[본조신설 2006.11.16.]

제31조의2(평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평의위원회는 당해 대학 교원·직원·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외의 저명한 인사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으로 구성하되, 구성단위 중 어느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2.8.)

②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학생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평의원에 위촉된 자가 임기 중 그 자격이 상실될 경우 해촉되며,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2.8.)

③ 기타 이 평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1.16.]

제31조의3(평의원의 자격 및 정수) 평의원은 이 법인의 설립목적 및 교육목표에 찬동하는 자로써 그 자격과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10., 2021.2.8.)

1. 교원 3인(10년 이상 재직자)
2. 직원 2인(10년 이상 재직자)
3. 조교 1인
4. 학생 1인(재학생)
5. 교외인사 4인(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자)

[본조신설 2006.11.16.]

제31조의4(의장 등) ① 평의위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의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본조신설 2006.11.16.]

제31조의5(소집) 평의위원회는 이사장, 대학교육기관의 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본조신설 2006.11.16.]

제31조의6(기능) 평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개정 2008.2.1.)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6.11.16.]

제 4 장 수익사업

제32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6.11.16., 2025.09.01., 2025.10.23)

- | | |
|-------------|------------|
| 1. 영농사업 | 2. 채광사업 |
| 3. 조림사업 | 4. 공원 묘지사업 |
| 5. 인쇄업 | 6. 목공업 |
| 7. 토목·건축업 | 8. 출판업 |
| 9. 주택 건설 사업 | 10. 임대업 |
| 11. 삭제 | |

제33조(수익사업의 명칭) 제32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경민학원 사업소를 경영 한다. (개정 2006.11.16.)

제34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수익사업체의 사무소는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545 (가능동)에 둔다. (개정 2014.2.15.)

제35조(관리인) ① 제33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해 산

제36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2.10.)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개정 2009.2.10.)

제38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9.2.10.)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명

제39조(임면)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나, 중·고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1.)

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강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하며, 강사의 임용·재임용·신분보장·징계 등의 제반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8.1.)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전형에 하여야 하며, 공개전형으로 채용하는 교원임용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④ 교원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⑤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여 원로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6.6.29.)

[전문개정 2006.11.16.]

제39조의2(정년보장 교원의 심사) ① 대학 교원의 정년보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해 대학이 정하는 정년보장교원 심사기준에 따라 해당 교원의 연구실적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대학의 장이 정한다.

④ 정년까지 임용되는 교원의 정수는 당해 대학의 교원 법정정원(편제정원 기준)의 15% 이내로 한다. (개정 2016.4.25.)

제39조의3(교원의 특별승진임용)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 승진 임용할 수 있다.

1.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20년 이상 근속하여 명예 퇴직할 때

2.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제39조의4(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① 대학 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 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개정 2009.7.24., 2012.8.30.)

1. 근무기간

가. 교 수: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19.8.1.)

나. 부교수·조교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삭제 (2007.6.14.)

라. 강사, 비전임교원: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신설 2019.8.1.)

2. 급여: 정관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3. 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6.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면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면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 받은 임면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 조교는 학교의 장이 임면하되,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11.16.]

제39조의5(대학교원의 신규채용 등) ① 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소지자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된 교원이 당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동 대학에서 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동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1년을 단위로 적용하되, 연간 모집인원이 3인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모집인원이 3인 이상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③ 삭제 (2020.12.29.)

④ 삭제 (2020.12.29.)

⑤ 이사장은 대학 교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 마감일 15일 이상으로 학칙에서 정하는 기간 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강사는 지원 마감일 5일 이상으로 공고한다. (개정 2012.2.13., 2019.8.1)

⑥ 교원의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 채용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⑦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와 방법은 따로 “교원 신규채용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본조신설 2006.11.16.]

제39조의6 삭제 (2009.7.24.)

제40조(대학교원의 특별채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 자격을 가진 자(외국인 등 제외) 중에서 이사장은 기간을 정하여 특별채용 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 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5. 국·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을 본 대학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6. 외국인 임용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채용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내(외국인 교원의 경우 제외)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다만,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전문개정 2006.11.16.]

제40조의2(고등학교이하 학교의 기간제 교원) ① 고등학교이하 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 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② 기간제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③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간제 교원의 임용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의하여 임면권자는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06.11.16.]

제40조의3(전형결과 공개) ①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 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11.16.]

제 2 관 신분보장

제41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6., 2008.2.1., 2009.2.10., 2014.4.23., 2016.4.25., 2017.6.27.)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 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임시로 고용된 때
7. 만 8세 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관할청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기타 임면권자가 인정할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때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제42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1.16., 2008.2.1., 2017.6.27., 2019.12.26.)

1. 제4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41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41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1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재직 중 2회에 한하되, 그 기간은 각각 3년 이내로 한다.
7. 제41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1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1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41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11. 제41조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제43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제41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4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4.23.)

- ② 제4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의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1.16., 2014.4.23.)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4.23.)

제45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 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6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 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징계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8조(교원의 정년)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준용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교원으로서 정년에 달한자는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퇴직한다.

제48조의2(명예퇴직) ① 본 법인과 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중·고등학교 교직원의 명예퇴직은 국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에 그 범위에서 허가한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의 대상, 범위, 수당지급액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중·고등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는 국·공립학교 교직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③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 할 때에는 명예퇴직일에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8.17.]

제49조 삭제 (2015.8.17.)

제50조(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1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11.16.)

제5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11.16.)

1.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고등학교이하의 교원의 경우)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삭제 (2012.8.30.)

② 인사위원회가 정관 제39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전임용기간 중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6.)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제53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4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6.11.16., 2007.6.14., 2011.4.29.)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인사위원회의 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6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57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8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58조의2 삭제 (2014.6.27.)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9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2022.4.22., 2022.6.30.)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

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6.27., 2022.4.22.)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제3조 제2호부터제6호까지의 학교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

마.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17.6.27., 개정 2022.4.22.)

1.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한다.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은 아니된다.

3. 제3조제2호부터제6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에 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제59조의 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6조 제5항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위무를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17.6.27.]

제60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1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2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3조(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③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면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4조(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6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 및 관할청에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2.)

③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명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1., 2022.4.22.)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의 결정서를 교부 할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 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2.)

⑤ 임명권자는 관할청으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2.)

⑥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4.22.)

제67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8조(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16.4.25.]

제69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70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사 무 직 원

제71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 및 조교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2.8.30., 2014.4.23.)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4.23.)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72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근속승진·대우직원선발·승급·전직·전보·강등·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4.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④ 조교는 총장이 임면하되, 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8.30.)

⑤ 전직임용을 할 수 있으며 동일 직급 간에 한 한다. (신설 2018.3.1.)

제72조의2(정년) ① 이 법인 및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일반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개정 2009.2.10, 2014.4.23., 2016.4.25.)

1. 삭제 (2016.4.25.)
2. 삭제 (2016.4.25.)
3. 삭제 (2014.4.23.)
4. 삭제 (2014.4.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개정 2009.2.10.)

제72조의3 삭제 (2015.8.17.)

제73조(복무) 일반직원 및 조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중·고등학교 직원의 복무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조례)을 준용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8.30., 2017.6.27., 2020.6.29)

제74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

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중·고등학교 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2.8.30., 2016.4.25., 2017.6.27.)

제75조(신분보장) 일반직원 및 조교의 신분 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8.30.)

제76조(징계 및 재심청구) 일반직원 및 조교의 징계 및 재심청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하며, 조교의 징계위원회는 당해 학교에 둔다. (개정 2012.8.30.)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77조(법인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처를 두며 처장은 일반직 4급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자로 보한다. (개정 2012.11.2.)

② 법인사무처에는 인사총무부, 시설재무부, 사업운영부를 둔다. (개정 2012.11.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대 학 교 (개정 2014.4.23.)

제78조(총장 등)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개정 2011.4.29., 2014.4.23.)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개정 2011.4.29., 2014.4.23.)

③ 대학교에 2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개정 2011.4.29., 2014.4.23., 2021.9.29.)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4.29.)

제79조(하부조직) ① 대학교에 대학발전운영실, 교무학생처, 산학기획처, 입학취업처, 온다입학지원처, 행정지원처, 효실천본부, 정보도서관, 국제교육원, 평생교육원, 교목실을 둔다.

(개정 2006.11.16., 2007.3.19., 2007.12.17., 2008.3.27., 2010.8.31., 2011.4.29., 2012.8.30., 2013.5.20., 2014.4.23., 2014.6.27., 2014.11.5., 2016.4.25., 2017.8.14., 2019.3.1., 2019.7.1., 2021.3.1., 2023.08.31., 2025.9.1., 2026.7.1)

② 대학발전운영실, 교무학생처, 산학기획처, 입학취업처, 온다입학지원처, 실(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며, 행정지원처장, 효실천본부장, 정보도서관장, 국제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교목실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 및 5급 이상의 일반직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자로 보한다.

(개정 2006.11.16., 2007.3.19., 2007.12.17., 2008.3.27., 2010.8.31., 2011.4.29., 2012.8.30., 2013.5.20., 2014.4.23., 2014.6.27., 2014.11.5., 2016.4.25., 2017.8.14., 2019.3.1., 2019.7.1., 2021.3.1., 2023.08.31., 2025.9.1., 2025.10.23., 2026.7.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9조2(산학협력단) ①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산학협력단을 둔다. (개정 2014.4.23.)

②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 및 분담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0조(부속기관 등)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 부설교육기관 및 부설연구기관(이하 “부속기관 등”이라 한다)등을 둘 수 있으며, 부속기관 등의 설·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6.11.16., 2014.4.23.)

② 부속기관 등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기관 등의 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일반직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자로 보한다. (개정 2006.11.16., 2011.4.29.)

③ 부속기관 등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기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6.11.16., 2011.4.29.)

④ 부속기관 등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11.16.)

제81조 삭제 (2014.6.27.)

제 3 절 고등학교

제82조(교장 등) 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개정 2006.11.16.)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3조(하부조직)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일반직 5급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11.16.)

제 4 절 중 학 교

제84조(교장 등) ① 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개정 2006.11.16.)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5조(하부조직) 중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일반직 6급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11.16.)

제 5 절 유 치 원

제86조(원장 등) ① 유치원에 원장과 원감 1인을 둔다.

② 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며 원아를 보육한다.

③ 원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장리하며 원아를 보육하고 원장 유고시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유치원에 원무실을 두며 실장은 일반직 7급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11.16.)

제 6 절 정 원

제87조(정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2.2.13.)

제 8 장 학교운영위원회

제88조(목적) 이 8장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9조(위원회 설치범위) 병설학교는 분리하여 운영한다. (개정 2008.2.1.)

제90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1., 2022.12.26.)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삭제 (2022.12.26.)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
6.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7.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②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위원이 아닌 자가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2.12.26.)

제91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당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 배수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④ 위원의 선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9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93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삭제 (2019.2.8.)
-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94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6조에 따른 실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12.26.)

제95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부터 7호까지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개정 2022.12.26.)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이 제93조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6.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소속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때
7.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 제출한 때

제9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영 제59조 제7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26.)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7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8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전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제99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개정 2022.12.26.)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구하는 안전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일과 후 또는 주말에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들의 본업에 지장을 초

래하지 아니하는 때를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6.)

제100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 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16.)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01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 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개정 2022.12.26.)

제102조(의사 정족수 등)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2.12.26.)

제103조(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제104조(회의록 작성) ①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3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개정 2022.12.26.)

② 제1항의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③ 삭제 (2022.12.26.)

제105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용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06조(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107조(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6.)

제 9 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108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의거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경민중학교, 경민여자중학교, 경민고등학교,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 경민IT고등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2.2.13.)

제109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경기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에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직원의 회의 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은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 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 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111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2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3조(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 당사자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이나 유선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4조(회의개최 등) ① 회의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개최한다.

② 분쟁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5조(위원의 제척)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16조(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의결 등

인사 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7조(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18조(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자격상실, 기타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 정관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장 법인 임직원 및 학교의 교직원 행동강령

[신설 2022.12.26.], [종전 제 10 장은 제 11 장으로 이동]

제120조(청렴의무) 법인의 임직원 및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임원 및 교직원”이라 한다.)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12.26.] [종전 제120조는 제122조로 이동, 2022.12.26.]

제121조(행동강령) ① 제120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가.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
나. 이사장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4.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20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공무원행동강령」을 준용한다.

③ 임원 및 교직원이 제2항의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6.] [종전 제121조는 제123조로 이동, 2022.12.26.]

제 11 장 보 칙

제122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경기 신문에 공고한다.

제123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24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종전 제122조에서 이동, 2022.12.26.]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임 기	주 소
이 사 장	이 연 욱	1924.12. 2	4	서울 성북구 쌍문동 480
이 사	홍 우 준	1923. 4.23	4	서울 성북구 쌍문동 480
이 사	박 근 용	1925.12. 4	2	서울 영등포구 상포동 196-19
이 사	장 응 복	1923. 5.25	4	서울 용산구 한남동 28
이 사	김 윤 근	1925.11. 8	2	서울 중구 저동 2가 72-4
감 사	김 광 수	1926. 7.20	2	서울 용산구 남영동 93
감 사	이 형 기	1914. 1.13	1	서울 반포구 도화동 10의 1

부 칙

이 정관은 1968년 2월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행 1042.3)

이 정관은 1968년12월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행 1042.3)

이 정관은 1970년 8월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행 1042.3)

이 정관은 1973년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리 1042.3)

이 정관은 1973년12월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리 1042.3)

이 정관은 1975년10월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리 1042.3)

이 정관은 1976년 8월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리 1042.3)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8월16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자 중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 시행이후 6개월 이내에 당연 퇴직된다. (결격사유 해당자)
- ③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사무조직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 한다.
- ④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44조의 각 직급에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관리 1042-)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8월20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기없이 임명된 학교의 장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 ③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관리 제82-101호)

이 정관은 198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3호는 1983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리 제83-127호)

이 정관은 198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리 제85-187호)

이 정관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리 25422-438)

이 정관은 1990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리 25420-469)

이 정관은 1991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행 25422-463)

이 정관은 1991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행 25422-106)

이 정관은 199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전행 81422-674)

이 정관은 1993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행 81422-324)

이 정관은 1994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행 81422-973)

이 정관은 1994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행 81422-141)

이 정관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행 81422-141)

이 정관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행 81422-141)

이 정관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행 81422-623)

이 정관은 1996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행 81423-971)

이 정관은 199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행 81422-86)

이 정관은 1997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행 81422-644)

이 정관은 1997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행 81422-812)

이 정관은 1997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문 81422-80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직중인 일반직중 종전의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일이 1998년12월31일인 자는 해당 일자에, 1999년 6월30일인 자는 1998년12월 31일자, 1999년12월31일인 자는 1999년 3월31일자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③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경민여자상업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경민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전문 81423-530)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을 제외한다)중 생년월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각 해당 호에 규정된 일자에 당연 퇴직된다.

1. 1934년 2월28일 이전일자: 1999년 2월28일

2. 1934년 3월 1일부터 1937년 8월31일까지의 기간중에 있는자: 1999년 8월31일

제3조 (명예퇴직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 퇴직일에 퇴직하거나 그 이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교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제48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년을 적용한다.

② 이 정관 시행당시 재직 중인 교원 중 생년월일이 1937년 9월 1일부터 1942년 8월31일까지 인 자가 2000년 8월31일 이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년을 적용한다.

부 칙(전문 81423-60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6월 20일부터 시행하되, 200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최초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위원의 임기)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임기는 익년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제정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제정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제정한다.

부 칙(전문 81423-11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부조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전문대학의 하부조직 사무과, 교무과, 학생과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각각 학사지원처, 교무지원처, 학생복지처, 산학협력처, 정보운영처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로 구성되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1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의 임기는 익년도 3월31일까지로 한다.

제3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규정의 제정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제정하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제정한다.

부 칙(사학지원과-1772)

이 개정정관은 200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사학지원과-2749)

이 정관은 2005년 4월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문대학정책과-68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추천감사는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 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제3조(임원의 정수에 대한 경과조치) 정관 제18조 규정에 의한 이사의 정수는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임기 만료되는 이사 1인에 의해 자연 감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학교의 장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의 장의 임기 종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전문대학정책과-13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3월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부조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전문대학의 하부조직 실습관리처, 학사지원처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각각 실습지원처, 행정지원처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전문대학정책과-2794)

이 정관은 2007년 6월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문대학정책과-2211)

이 정관은 2007년 12월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문대학정책과-511)

이 정관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문대학지원과-164)

이 정관은 2008년 3월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문대학지원과-600)

이 정관은 2009년 2월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문대학정책과-2123)

이 정관은 2009년 7월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0년 8월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문대학과-2106)

이 정관은 2011년 4월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문대학과-9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2월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5호 및 제87조 별표5 제목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경민대학’ 및 ‘경민여자정보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경민대학교’ 및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8월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임강사의 명칭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3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이 정관에 따른 조교수로 본다.

② 제3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근무경력에 이 정관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2012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3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직원은 이 정관 시행 일에 일반직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능직직원 근무경력은 이 정관에 따른 일반직 직원 근무경력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 개정 규정은 2014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4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정관 시행당시 재임 중인 학교의 장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73조(복무), 제74조(보수)는 재정결함보조금지원 시점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2.8.30., 2014.4.23.)

[별표 2] (개정 2012.8.30., 2014.4.23.)

법인 일반직원 정원			경민중학교 일반직원 정원		
직 급 별		인 원	직 급 별		인 원
총 계		4 명	총 계		8 명
일반직 계		4 명	일반직 계		8 명
행정	4급	1 명	교육행정	6급	1 명
	6급	1 명		7급	1 명
	소계	2 명		8급	1 명
관리운영	7급	1 명		9급	1 명
	9급	1 명		소계	4 명
	소계	2 명	사무운영 . 시설관리	9급	4 명
		소계		4 명	

[별표 3] (개정 2012.8.30., 2014.4.23.)

[별표 4] (개정 2012.8.30., 2014.4.23.)

경민여자중학교 일반직원 정원			경민고등학교 일반직원 정원		
직 급 별		인 원	직 급 별		인 원
총 계		9 명	총 계		8 명
일반직 계		9 명	일반직 계		8 명
교육행정	6급	1 명	교육행정	5급	1 명
	7급	1 명		6급	1 명
	8급	1 명		7급	1 명
	9급	2 명		8급	1 명
	소계	5 명		소계	4 명
사무운영 · 시설관리	9급	4 명	사무운영 · 시설관리	9급	4 명
	소계	4 명		소계	4 명

[별표 5] (개정 2012.8.30., 2014.4.23.)

[별표 6] (개정 2012.8.30., 2014.4.23.)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 일반직원 정원		
직 급 별		인 원
총 계		9 명
일반직 계		9 명
교육행정	5급	1 명
	6급	1 명
	7급	1 명
	8급	2 명
	소계	5 명
사무운영 · 시설관리	9급	4 명
	소계	4 명

경민IT고등학교 일반직원 정원		
직 급 별		인 원
총 계		11 명
일반직 계		11 명
교육행정	5급	1 명
	6급	1 명
	7급	1 명
	8급	1 명
	소계	4 명
사무운영 · 시설관리	9급	7 명
	소계	7 명

[별표 7] (개정 2012.2.13., 2014.4.23.)

[별표 8] (개정 2012.2.13., 2014.4.23.)

경민대학교 일반직원 정원			경민대학 부설 경민유치원 일반직원 정원																																																																										
<table><tr><th colspan="2">직 급 별</th><th>인 원</th></tr><tr><td colspan="2">총 계</td><td>62 명</td></tr><tr><td colspan="2">일반직 계</td><td>55 명</td></tr><tr><td rowspan="7">행정</td><td>3급</td><td>1 명</td></tr><tr><td>4급</td><td>2 명</td></tr><tr><td>5급</td><td>6 명</td></tr><tr><td>6급</td><td>8 명</td></tr><tr><td>7급</td><td>13명</td></tr><tr><td>8급</td><td>8 명</td></tr><tr><td>소계</td><td>38명</td></tr><tr><td rowspan="5">관리운영</td><td>6급</td><td>1 명</td></tr><tr><td>7급</td><td>4 명</td></tr><tr><td>8급</td><td>5 명</td></tr><tr><td>9급</td><td>7 명</td></tr><tr><td>소계</td><td>17명</td></tr><tr><td colspan="2">기술직 계</td><td>7 명</td></tr><tr><td rowspan="6">기술</td><td>4급</td><td>1 명</td></tr><tr><td>5급</td><td>1 명</td></tr><tr><td>6급</td><td>1 명</td></tr><tr><td>7급</td><td>2 명</td></tr><tr><td>8급</td><td>2 명</td></tr><tr><td>소계</td><td>7 명</td></tr></table>			직 급 별		인 원	총 계		62 명	일반직 계		55 명	행정	3급	1 명	4급	2 명	5급	6 명	6급	8 명	7급	13명	8급	8 명	소계	38명	관리운영	6급	1 명	7급	4 명	8급	5 명	9급	7 명	소계	17명	기술직 계		7 명	기술	4급	1 명	5급	1 명	6급	1 명	7급	2 명	8급	2 명	소계	7 명	<table><tr><th colspan="2">직 급 별</th><th>인 원</th></tr><tr><td colspan="2">총 계</td><td>4 명</td></tr><tr><td colspan="2">일반직 계</td><td>4 명</td></tr><tr><td rowspan="3">행정</td><td>7급</td><td>1 명</td></tr><tr><td>8급</td><td>1 명</td></tr><tr><td>소계</td><td>2 명</td></tr><tr><td rowspan="2">관리운영</td><td>9급</td><td>2 명</td></tr><tr><td>소계</td><td>2 명</td></tr></table>			직 급 별		인 원	총 계		4 명	일반직 계		4 명	행정	7급	1 명	8급	1 명	소계	2 명	관리운영	9급	2 명	소계	2 명
직 급 별		인 원																																																																											
총 계		62 명																																																																											
일반직 계		55 명																																																																											
행정	3급	1 명																																																																											
	4급	2 명																																																																											
	5급	6 명																																																																											
	6급	8 명																																																																											
	7급	13명																																																																											
	8급	8 명																																																																											
	소계	38명																																																																											
관리운영	6급	1 명																																																																											
	7급	4 명																																																																											
	8급	5 명																																																																											
	9급	7 명																																																																											
	소계	17명																																																																											
기술직 계		7 명																																																																											
기술	4급	1 명																																																																											
	5급	1 명																																																																											
	6급	1 명																																																																											
	7급	2 명																																																																											
	8급	2 명																																																																											
	소계	7 명																																																																											
직 급 별		인 원																																																																											
총 계		4 명																																																																											
일반직 계		4 명																																																																											
행정	7급	1 명																																																																											
	8급	1 명																																																																											
	소계	2 명																																																																											
관리운영	9급	2 명																																																																											
	소계	2 명																																																																											